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간의  
복수학위협정서 (DUAL DEGREE AGREEMENT)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이하 “동아시아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이하 “대만문학연구소”)는 국제적 관례에 따른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복수학위 협정을 실행해 나가는데 상호 합의한다.

## I. 협정 개요

1. 본 협정은 다음의 활동을 추진한다. : 복수학위제도
2. 본 협정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동아시아학과)과 대만 국립 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II. 학생선발

1. 본 과정의 학생 선발방법과 모집 절차는 양교의 관련 조례 또는 복수학위과정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선발 학생은 한국과 대만의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양교 간 추천과 수용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3. 수용대학은 파견대학이 추천한 학생의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4. 파견대학은 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5. 입학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 석사학위 신청자: 학사학위 소지자
- 나. 박사학위 신청자: 석사학위 소지자
- 다. 면접시험 합격자

### III. 학사 요건

1. 양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이수와 학위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되, 상호 합의에 따라 적용한다.
2. 양교는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3. 복수학위생은 수용대학에서 2개 학기를 등록해야 하며, 입학 첫 학기와 학위 취득 최종 학기는 원 소속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4. 복수학위생은 양교가 정하는 학사제도를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양교는 복수학위생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해야 한다.
6. 학과장은 복수학위생에게 학기별 이수학점과 교과목을 지정하고,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양교는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교와 수용학생에게 통보한다.
8. 양교는 성적 또는 학위논문심사 결과 통보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행정 사항에 양교의 학사제도와 일정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

#### **IV. 학위논문과 학위수여**

1. 학위논문은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논문자격시험은 수용대학의 자격기준 및 학칙에 따라 시행한다.
3. 학위논문 심사는 양교의 학사제도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4. 복수학위생은 논문심사 통과 후 수용대학의 규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하고, 추가로 2쪽 분량의 요약본(중국어/한국어)을 제출한다.
5. 복수학위생이 양교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양교는 문학석사 또는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 **V. 등록 및 비용**

1. 복수학위생은 원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용대학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2. 양교는 복수학위생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학교가 숙소 제공시, 숙박에 관한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3. 기타 제반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VI. 부칙**

1. 본 협정서는 양교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협정기한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일 어느 일방이 조항의 개정이나 종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지한다.
2.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보충 협의는 본 협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협정 이후 양교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쟁론, 이의 및 분쟁은 양교가 합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4. 본 협정서는 한글과 중국어 각 2부로 작성되며, 양교가 각각 한글과 중국어 1부씩 보관하며,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성균관대학교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소장

진재교

범명여

陳在教

范明여

---

서명일: 2017. 12. 7.

---

서명일: 2017. 12. 7.